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운영방법 안내

('21. 1. 26.,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에게 허용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운영방법·절차등에 안내를 통해 연합회의 역할 제고 및 협동조합간 연대강화 촉진

□ 개요

○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간 상호부조 위한 공제사업** 가능(법 제80조의2)

- 공제사업은 '회원 간 상호부조 목적으로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필요

* 기재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운영 및 계약자 보호 위해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 운영방법, 공제규정의 마련절차 및 내용, 인가신청**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

□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요건

○ **(공제상품) 회원 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으로 회원 채무 또는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법 제80조의2제1항)

- 복지향상, 재난, 경영위기 등의 사유(정관에 규정)에 대해 **별도의 상환조건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상호부조의 목적사업

* 이자 또는 상환조건을 부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사업(대출 등)에 해당하므로 금지

- 공제상품은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사업 실시

* 적립금 부족을 이유로 출자금이나 잉여금을 공제료로 전환하는 것은 금지

- 사업운영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 등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 금지**

○ (인가요건) 인가 요건을 충족한 일반·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 (법 제80조의2, 제115조, 제117조의7)

- **'인가 요건'은 회원 수가 10인 이상**이고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이상 요건을 충족한 연합회** (시행령 제16조제1항)

*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불가 →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총액 한도내에서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은 가능(법 제94조)

○ **(운영대상)** 공제사업은 연합회의 **회원인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 대상이 아님**

*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조사 등 상호부조 불가

□ 공제사업의 운영방법

○ **(정관 변경)** 공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합회는 **'정관'에** 공제사업의 수행의 근거규정 마련 필요 (총회 의결)

- 공제사업 실시, 공제규정 마련 및 포함될 내용,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등 공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

<참고1>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2020.10월)
제60조의2(공제사업) ① 제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제5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공제규정 마련)**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공제규정'에 규정**

- **공제규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 제·개정**

  *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의 서류종류에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규정(규칙 제13조)하고 있어서 반드시 총회 의결 필요(규약 성격)

- 공제규정은 협동조합기본법령 및 관련 법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필수사항은 반드시 포함**

  * **(필수사항)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16조제6항)**

○ **(공제모집)** 연합회 임·직원 등이 공제모집을 위해서는 공제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해야 하고 **모집관련 준수사항 이행** 필요

-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규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민원·분쟁의 사전예방 및 모집관련 규정** 준수

  *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 공제보장내용, 해약환급금, 공제계약자 보호내용,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공제상담·문쟁해결 등

  * 통신수단 이용하며 모집하려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받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필요 등

-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방해행위 포함) 금지

  * 이미 성립된 공제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공제계약 청약도 금지

- 모집과정에서 금품 제공,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는 공제료 할인 또는 공제금 지급약속, 공제료 대납 등 금지

- 연합회는 연합회의 임·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공제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 부담

  * 연합회가 상당한 주의의무(손해방지 노력 포함)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가능하며, 손해발생시킨 모집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별도회계)** 공제사업은 **공제료의 적립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운용**(정관)

○ **(운용방법)** 연합회에서 **직접 운용**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운용**(부분위탁* 포함)하는 것도 가능

* 모집은 연합회, 공제료 지급은 외부기관 등 →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범위 및 방법 등을 규정에 명시

□ 공제규정의 내용(시행령 제16조제6항)

○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① 공제목적, 공제상품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공제상품)** 공제상품의 기초서류(개발기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준비금·해약환급금 등의 산출방법서 작성

▶ **(공제범위)** 공제금의 지급사유, 공제금 지급액에 대해 공제규정에 규정해야 하며, 상호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공제상품은 불가능

* (지급사유 예시) 지사 신설, 회원 친목도모 지원, 긴급자금 지원, 손실보상 지원 등

* (금지사업) 지원받은 자금을 돌려받는 형태, 예금 또는 자금 대출

▶ **(손실보상)** 대출과 유사한 형태로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할 수 없음

② 공제계약의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원칙)** 부당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으며, 제계약자의 권익보호에 최선

▶ **(모집대상)** 연합회 회원만 공제회 가입 가능, 비회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은 가입 불가

▶ **(모집할 수 있는 자)** 연합회의 임·직원 및 계약을 통해 공제사업을 위탁받은 자

* 모집자가 모집 과정에서 공제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 **(안내자료)**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함하여 공제료·공제금·보장내용·해약환급급 등과 관련한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

▶ **(통신수단)** 전화·우편·온라인 등 통신수단을 통해 모집할 경우, 이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시행

▶ **(설명의무)** 공제자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료, 공제금, 청약의 철회 등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

▶ **(특별이익 제공금지)** 모집하는 자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규정에 위반한 공제료 할인 등의 특별이익 제공 불가

③ 공제사업자 및 공제가입자 등 공제계약관계자에 관한 사항

④ 공제사업 운용방법, 공제자산의 운영방법, 공제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공제관련 분쟁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공제회 조직)**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독립된 운영 체계로 운영

▶ **(자산운용방법)** 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운용

*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정치자금 대출 등은. 불가

▶ **(경영공시)** 연합회는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 상품공시란을 두고 공제사업 운영현황 공시하고, 기재부가 지정하는 경영공시 사이트에 자율 경영공시를 권고

○ 공제계약의 내용

①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被共濟者)의 범위

* 연합회 회원인 협동조합 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② 공제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 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④ 공제계약의 변경 및 무효에 관한 사항

⑤ 공제계약의 해지, 부활, 소멸에 관한 사항

⑥ 공제사업자의 의무범위 및 면책 사유에 관한 사항

○ 공제료에 관한 사항

- 공제료의 계산 및 수납에 관한 사항

▶ 공제료 산정은 정액 또는 정률기준 중 하나의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액은 회원 간 합의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

▶ 공제료 납부시기에 따라 '정기공제료'와 '특별공제료'로 구분

* (정기공제료) 월, 분기 등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료

* (특별공제료) 회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부정기적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공제료

▶ 일시납부(정기공제료) 또는 장기가입자의 경우 공제료 할인 가능

- 미수 공제료의 계상 범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 (공제계약 무효·해지·소멸 등에 따른)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 적립금에 관한 사항(적립방법, 적립금 자산운용, 재보험 등)

○ **기타 공제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공제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

* 준비금제도(책임준비금, 특별위험준비금 등), 공제복지기금, 재무건전성(지급여력, 자산건전성, 위험관리 등)에 관한 사항, 손해사정에 관한 사항 등

□ 공제사업의 인가 신청

○ **(신청서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필수서류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로 신청

* 정관 사본, 공제규정,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공제사업 계획서,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공문)으로 통보('00.10.1 인가간주제 도입)

* 영 제16조에 따른 인가요건에 미달하거나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외에는 인가

-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인가 처리 기간에 불산입

-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절차는 인가신청 절차와 동일

□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감독

○ **공제사업 결과 보고**(경영공시)

- **(내용)** 공제규정 사본, 공제사업 결과보고서,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등을 공시

* 재무 및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제상품에 관한 내용 포함

- **(시기)**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고(공시)

- **(방법)** 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보고하고, 기재부가 지정하는 경영공시 사이트(www.coop.go.kr) 공시하여야 함

* 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자료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공시

○ **운영에 대한 감독**

- **(내용)** 경영공시(매년) 여부, 법령사항 및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시기)** 연합회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제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방법)** 경영공시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감독 및 시정명령

* 감독 결과, 법령 또는 인가내용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영시 인가취소 및 금융 및 보험업 위반소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로 감독 요청**

참고 1 공제사업 관련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본조신설 2014. 1. 21.]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9. 2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9. 29.>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9. 29.>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0. 9. 29.]	

참고 2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29.>

[ ] 협동조합연합회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회장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회원 수(개)	출자금 납입총액(원)	공제규정 의결 총회 개최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2항, 제115조제2항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사업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210㎜×297㎜[백상지 80g/㎡]

참고 3

공제사업 사업결과보고서(안)

■ [별지 제 00호서식]

공제사업 사업결과 보고서
(0000년 12월 31일 현재)

조직 개요	조합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원(A)

공제사업 계약 현황	월별 납부액	(정액기준 시) 00,000 원, (정률기준 시) 기준액 * 0.00 % 등 정관·규약·규정 등에 정한 납부액 명시	
	지급사유별 지급액	○○○	원
		△△△	원
			원
			원
공제사업 적립금 현황	전년도 적립금 잔액(G)		원
	해당 연도 수입(H)		원
	해당 연도 지출(I)		원
	해당 연도 적립금 잔액 (J=G+H-I)		원
	출자금 대비 적립금 잔액 비율(K=J/A)		(%)

분기별 공제사업 적립금 현황(매월 말일 기준, 단위: 원. %)

구 분	직전 연도 4/4분기	해당 연도 1/4분기	해당 연도 2/4분기	해당 연도 3/4분기	해당 연도 4/4분기
전기 잔액(G)					
당기 수입(H)					
당기 지출(I)					
당기 잔액(J)					
출자금 대비 적립금 잔액 비율(K)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참고 4 소액대출, 상호부조, 공제사업 내용 비교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소액대출	상호부조	
개념	조합원 대상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대출	조합원 대상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부조금 지급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에게 공제료 수납 및 공제금 지급
근거법령	법 제94조	법 제94조	법 제80조의2
대상	조합원	조합원	연합회의 회원 (협동조합) ※ 회원(조합)의 조합원 제외
재원	출자금	상호부조 회비	공제료
인가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제한없음)	사회적협동조합 (제한없음)	- 회원수 10인 이상 및 출자금 1억원 이상 - 공제규정(총회필수 의결) 제출
한도	- 납입출자금 총액 2/3 한도 - 정관에 규정	- 상호부조회비의 적립금 한도 - 지급사유와 사유별 지급한도 정관에 규정	- 공제료 적립금 한도 - 공제사업의 세부내용 공제규정에 규정
정관필수 기재사항	- 소액대출의 종류 - 대출 한도 - 이자율 최고한도 - 연체이자율	- 지급 사유 - 상호부조금의 한도 -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	- 공제사업 실시 (공제규정 위임) - 「공제규정」 필수기재사항 · 공제사업 실시방법 · 공제계약 내용 · 공제료
시행절차	정관 제·개정 절차, 규정 별도인가 不要	좌동	정관 제·개정 절차와 규정 별도인가 必要
회계	주사업 및 기타사업과 구분 계리	좌동	좌동
결과공시	사업 결산보고서 공시	좌동	경영공시
위반시 처벌	시정명령, 과태료(200만원), 인가취소 감독·고발조치 등	좌동	시정명령, 인가취소 감독·고발조치 등